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자체 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10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10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지자체의 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민간의 주차설비 설치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21조의5 신설)	2
※ 참고자료	7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22181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4. 6.
3. 회 부 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자체의 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민간의 주차설비 설치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21조의5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 및 주차공간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소유자 등에게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주차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③주차공간 공유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④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5(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 및 주차공간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주차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구축한 주차정보시스템에 개별 주차장의 주차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실시간 주차정보가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유체계가 도입되고 있음.(참고1. 참조)

그런데,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주차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124곳(54.9%)으로 나머지 절반 가량은 주차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7개 특·광역시의 주차정보시스템의 개별 주차장

연계율을 보면, 서울이 52.2%로 가장 높고 나머지 지역 중에는 대구(2.3%)를 제외하고는 모두 1%에도 못 미치고 있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공유주차정보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주차공유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 · 광역시 지자체주차정보시스템 연계 현황(2025) >

(단위 : 개소)

특·광역시	전체 주차장(A)	연계 주차장(B)	비율(B/A, %)
서울	312,435	162,933	52.15
부산	109,360	42	0.04
대구	69,376	1,613	2.33
인천	125,768	27	0.02
광주	41,560	227	0.55
대전	47,619	21	0.04
울산	50,839	76	0.15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 및 주차공간 공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주차장의 정보를 공유주차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주차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는 경우,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기간 배회 운행으로 유발되는 교통혼잡이나 이면도로상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주차공간 이용의 효율성과 주차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1조의5제2항에서 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주차설비 설치 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¹⁾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²⁾에 따르면 주차공유 지원사업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³⁾에서는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이하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290. 주차환경 개선 지원

나. 국토교통부 의견

공유주차제도는 주차공간의 시간적 미활용분을 민간 참여를 통해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 등을 통해 운영 중임.

지자체 특성별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요금감면 등 제도의 핵심 요소를 일괄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개인 소유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사적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용 조건 변경, 예약 불이행, 시설훼손 책임 등 변수에 따른 지자체의 동향을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노상에 위치한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이 전제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이중 혜택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공유가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 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 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8조(구·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②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군·구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군·구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